제57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

1. 일 시: 2019. 6. 27(목) 16:00-16:15

2. 장 소 : 금강대학교 본관 대회의실

3. 자문 및 심의안건 :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(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.)

성명	서명	꿘	서명
고수현	J-F31A	가동훈	123
이승남(광도)		이문선(덕중)	
이원식		남용광(진성)	
정상교	7832	허준범(자룡)	21 A 28
신동호(거성)		김호중	
박찬기	祖社社		

제5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く 참 석 자 : 고수현, 정상교, 신동호(거성), 허준범(자룡), 박찬기, 강동훈 이상 6명>

〈 불참석자: 이원식, 이승남(광도), 이문선(덕중), 남용광(진성), 김호중 이상 5명 >

< 배 석 자 : 박연석 >

박연석기조팀장: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참석의원 6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〈본회의〉

고수현 의장 :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평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부터 제57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

오늘은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를 하겠습니다.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.

강재원: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

고수현의장: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강동훈 의원 : 2항 청강 부분은 교수님들의 수업권 차원에서 삭제 한 것 같습니다. 교수의 승인을 얻어 청강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

정상교의원 : 할 수 있다. 라는 문구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.

신동호의원 : 이 부분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은 고민을 하고 문구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변경(안) 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

강동훈의원 : 네 좋습니다.

고수현 의장 :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평의원 전원 : 찬성 합니다.

고수현 의장: 그럼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은 원안대로 심의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제57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<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침>

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

1. 개정의 사유 - 기존의 규정 내용 중 청강에 대한 부분은 교수의 권한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 그 문구를 삭제 함.				
2. 개정의 주요내용(주요골자) 제46조(연구생) 개정				
3.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신구대조표 현 행				
제46조(연구생)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 중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이나, 대학원 수료 후 논문준비를 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				
로 입학할 수 있다. ② 연구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를	② 연구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			
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 ④ 연구생은 총 석사 5년 박사 10년의 재학년한을 가지며,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다.				
	부 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일부터 시행한 다.(제46조 ②)			